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76회 1차 정례회

## 검토보고서

2025. 6. 16.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**행정건설위원회**
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5. 5. 23.
- 회부일 : 2025. 5. 23. (의안번호 : 25-54)

## 2. 제안이유

○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위원 회피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, 위원회 존속 기한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위원회 관리상 효율성 증대 및 성별 관련 근거 법규 구체화  
(안 제9조)
- 위원의 회피규정 의무화(안 제11조)
-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한 구의회 보고 명문화  
(안 제14조)

- 위원회 존속기한 명문화(안 제15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 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
  - 권익위의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: 감사담당관- 7898(2024. 8. 7.)호
  - 입법예고: 2025. 4. 17.~5. 7. (제출된 의견 없음)

#### 5. 검토보고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위원회 회피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, 위원회 존속 기한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# ① 조례의 개정 취지

- 위원회 관리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,
-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회피 규정 의무화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,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른 구의회 보고 및 위원 존속기한 명문화를 통한 위원회 관리 강화를 위함.

## ② 주요 개정내용

- 위원 위촉 절차 정비 (제9조 제3항 신설)
  - 위원회 담당 부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장과 사전 협의하고, 위촉 후 명단을 총괄부서에 통보토록 의무화
- 위촉 한도 표현 정비 (제9조 제4항)
  - “같은 사람이” → “위원 1명당”으로 수정
- 양성평등 관련 표현 정비 (제9조 제5항)
  - “경우에는” → “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”로 수정
- 회피 의무 명문화 (제11조 제3항)
  - “회피할 수 있다” → “회피하여야 한다”로 수정
- 운영현황 보고의무 신설 (제14조 제3항)
  - 구청장이 운영현황을 정리하여 매년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
- 존속 기한 명시 조항 신설 (제15조 제1항, 제2항 신설)
  - 위원회 설치 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설정토록 하고, 예외는 법령에 따른 경우로 제한

## ③ 개정내용 검토

-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체계성·투명성 제고, 위원 중복위촉 방지 및 회피제도 강화로 공정성 확보, 구의회에 대한 책임 있는 운영 결과 보고체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됨.

## 6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권익위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마포구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,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행정적 일관성과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

### 「지방자치법」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80조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